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65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임미애 · 김 윤 · 김한규
박홍배 · 서삼석 · 송옥주
이병진 · 이연희 · 임오경
조계원 · 주철현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 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어업환경 악화 및 고령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척하는 한계 어업인의 생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을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로 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u> <u>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어 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 금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 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을 양도 후 5년 이내 에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 차하여 어로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u>